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56호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-3BL 공공주택 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1월 0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(2차)변경 승인 (남양주진접2 A-3BL)

1. 사업명 : 남양주진접2 A-3BL 공공주택 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

2. 사업시행자

구분	기정	변경	비고
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	좌동	
주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(충무공동)	좌동	

3. 사업개요

구분	기정	변경	비고
가. 대지위치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(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-3BL)	좌동	
나. 사업면적	13,943.00㎡	좌동	
다. 대지면적	13,943.00㎡	좌동	
라. 연면적	47,788.05㎡	47,516.40㎡	감 271.65㎡
마. 사업규모	아파트 5개동(366호, 12~29층) 및 부대·복리시설	아파트 5개동(366호, 9~27층) 및 부대·복리시설	
바. 구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동	
사. 사업비	104,405,544천원 (주택도시기금 19,238,180천원)	175,099,911천원 (주택도시기금 18,975,020천원)	증 70,694,367천원
아. 사업기간	사업승인고시일 ~ 2027. 12 .	사업승인고시일 ~ 2028. 03 .	

4. 기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,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에 비치(1600-1004)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